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30일, 박상웅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2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4.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4.23.) 상정, 소위심사
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상웅의원)

현행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제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법적 요구 사항 준수 및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무자격자가 선임자 역할을 맡거나, 교대 근무시 교대 조에 선임자 없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만, 교대근무자의 법적 선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없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음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와 같은 중요한 검사대상기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일 선임자에게만 의존해선 안되고,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선임자의 상시근무, 직무범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이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전기안전관리법」 등과 같이 관리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자 부재로 인한 기기의 안전관리 공백 등을 방지하고 제도개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지 아니한 자 및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78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 하여금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 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및 제78조제4항제9호의5·제9호의6 신설 등).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생 략)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 과 <u>선임기준은</u>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한다.	② ----- -- <u>선임기준</u> 등은----- -----.
③ (생 략) <u><신 설></u>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u>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 기기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 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시 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13의2. (생략) 14.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 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 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 기에 관한 승인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13의2. (현행과 같음) 14. -----제5항----- ----- ----- -----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 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벌칙) -----제5항 ----- ----- -----.
제78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 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 한다. 1. ~ 9의4. (생략) <신설>	제7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 -----. ----- -----제9호의5----- -----. 1. ~ 9의4. (현행과 같음) 9의5.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

현행	개정안
<신설> 10. ~ 12. (생략) ⑤ (생략)	<u>너지이용의 효율 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u> <u>9의6. 제40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u> 10. ~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일러 등 열사용기자재를 특정열사용기자재¹⁾로 분류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시공업 등록 제도, 제조·설치·수입에 대한 검사 제도,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2] 특정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관리 제도

구분	내용	관련 근거
시공업 등록 제도	특정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설치·시공·세관 등을 업으로 하는 시공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제37조
제조·설치·수입에 대한 검사 제도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 제조·설치·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제39조 제39조의2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서는 특정열사용기자재를 보일러, 태양열집열기, 압력용기, 요업요로, 금속요로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 제도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 선임	제40조
--------------------	---	------

제40조²⁾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 제도는 특정 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는 무자격자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는 사례가 있고,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교대근무자에 대한 관리자 선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없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³⁾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3) 가스신문, “[시론]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 선임자 법적 명확성 필요”, 2024.12.12. 참조

이에 개정안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 하여금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부재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 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로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면서 안전관리자 부재 시 직무 대리자(또는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입법례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15조제4항),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29조제3항),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자 지정(제22조제5항) 등이 있음.

[표 3] 유사 입법례 비교

구 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내용	•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자(또는 수탁관리자)가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u>안전관리자 선임</u> • 다음의 경우 일시적으로 <u>안전관리자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 지정</u> 1.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가스공급시설·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u>안전관리자 선임</u> • 다음의 경우 일시적으로 <u>안전관리자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 지정</u> 1.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전기사업자 등이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u>전기안전관리자 선임</u> • 다음의 경우 일시적으로 <u>전기안전관리자 직무를 수행하는 대행자 지정</u> 1.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위반시 제재	대리자 미 지정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리자 미 지정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행자 미 지정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정안과 같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자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24시간 가동되는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등을 담당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 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규범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피고용인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안전관리 등 직무불수행에 대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일반적인 직무 해태 행위에 대해서 피고용인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일반적인 입법례의 경우 사업자에게 안전관리규정 작성·제출·준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관리규정 위반 시 그 위반한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안전관리자의 구체적인 안전에 관한 의견 및 권고를 위반한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⁴⁾하고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들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 ⑤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들,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 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둔 여타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관리자에게 직무범위외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 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43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직무대행자 지정 기간 및 자격기준을 보충하는 등의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4.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산업부 소관의 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해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에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수정주요내용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0조제2항 중 “등은”을 “, 직무범위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그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자격기준을 갖춘”으로 한다.

안 제7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호의5까지의”를 “제9호의6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5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의6 중 “따른”을 “따라”로 한다.

9의5.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안 부칙 중 “6개월이”를 “1년이”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0조(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 ① (생략)	제40조(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제40조(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자격기준과 <u>선임기준은</u>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 ----- <u>선임기준</u> 등은----- ----- -.	② ----- ----- -----, <u>직무범위</u> 등은-----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④ <u>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u>	④ ----- ----- ----- ----- ----- ----- ----- ----- ----- ----- ----- <u>그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자격기준을 갖춘</u> -----

<u>④</u> (생략) 제78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u>제9호의4</u>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 9의4. (생략) <신설>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제9호의5</u> ----- ----- ----- -----. 1. ~ 9의4. (현행과 같음) <u>9의5. 제40조제1항</u> <u>에 따른 검사대</u> <u>상기기의 안전관</u> <u>리, 위해방지 및</u> <u>에너지이용의 효</u> <u>율 관리에 관한</u> <u>직무를 수행하지</u>	----- ----- ① ~ ③ (개정안과 같음)제78조(과태료) ④ ----- ----- ----- ----- ----- ----- <u>제9호의6까</u> <u>지의</u> ----- ----- -----. 1. ~ 9의4. (개정안 과 같음) <u>9의5. 제40조제2항</u> <u>에서 정한 직무</u> <u>범위 이외의 업</u> <u>무를 수행하게</u> <u>한 자</u>
--	--	--

<신 설> 10. ~ 12. (생 략) ⑤ (생 략)	<u>아니한 검사대상</u> <u>기기관리자</u> 9의6. 제40조제4항 <u>에 따른 검사대</u> <u>상 기기 관리자의</u> <u>직무대행자를 지</u> <u>정하지 아니한</u> <u>자</u> 10. ~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u>이 법은 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9의6. ----- ----- 따라 -- ----- ----- ----- --- 10. ~ 12. (개정안 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부 칙 -----1 <u>년이</u>-----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선임기준은”을 “선임기준, 직무범위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9조제3항제1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5조 중 “제4항을”을 “제5항을”로 한다.

제7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호의4까지의”를 “제9호의6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5 및 제9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5.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9의6. 제40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생략)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u>선임기준은</u>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선임기준, 직무범위 등</u> ----- --. ③ (현행과 같음) ④ <u>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1. ~ 13의2. (생략)

14.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단서
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
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
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
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 9의4. (생략)

<신설>

-----.

1. ~ 13의2. (현행과 같음)

14. -----제5항-----

제75조(벌칙) -----
제5항을-----

-----.

제7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9호의6까지의-----

-----.

1. ~ 9의4. (현행과 같음)

9의5.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직

<u><신 설></u> 10. ~ 12. (생 략) ⑤ (생 략)	<u>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u> <u>게 한 자</u> <u>9의6. 제40조제4항에 따라 검사</u> <u>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u> <u>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u> 10. ~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